

예 산 총 칙

2006년도 [3 회추경]

* 제1조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294,962,214	8,848,866
일 반 회 계	252,829,921	7,584,898
특 별 회 계	42,132,293	1,263,969
의료보호기금	888,083	26,6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815,260	24,458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	114,575	3,437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	15,752,120	472,564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	6,696,776	200,903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	10,889,030	326,671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937,921	28,138
교통사업	5,994,885	179,847
주택사업	31,023	931
기반시설	12,620	379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803,397천원으로 한다

* 제5조 : 2006년도 계속비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별첨과 같다

* 제6조 :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